

수신 수신자참조
(경유)

제목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안내

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이 '19.11.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, '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'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부서에서는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○ 특정기술 선정심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

구 분	기 존	변 경
위원회 명칭	·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	·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
근거법령 및 규정	·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·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요령 ·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(예시) 안내	· 서울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·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
특정기술 선정심사 제외대상	· 계약심사 제외 대상사업	- 계약심사 대상사업 여부 관계없이 - · 서울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· 관련 특정기술들간에 제한 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 ※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(MAS) 2단계 경쟁대상 사업 심사 제외
위원회 구성	·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7명 이내 공무원 ※ 필요 시 외부전문가 위촉	· 위원장 포함 5명 이상(심사대상 금액 10억 초과 시 7명 이상) 구성하되, 외부위원 과반 구성
기 타		· 위원 제척 · 기피 · 회피 조항 추가 · 청렴서약서 작성 조항 추가 등

붙 임 :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관과01-165, 서구1-25, 서사01-42, 서사04-07(방재센터, 소방학교, 119특수구조단, 청와대소방대),
서상수1-40, 서울시출연기관, 서울시투자기관

주무관 성남숙 심사총괄팀장 김형일 계약심사과장 11/26 김수정

협조자

시행 계약심사과-20596 (2019.11.26.) 접수 물재생시설과-15679 (2019.11.28.)
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(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제1동 9층) / <http://seoul.go.kr>

전화 /전송 / / 대시민공개

**「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및 같은
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요령 안내임**

1 용어 정의 (조례 제2조)

1. 특정기술

- 공사 및 물품제조·구매 발주 시 업체명·모델명·규격·사양·공법·신기술·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·특정공법 등을 말함.

2. 재료원가

-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(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)을 말함.

3. 순공사원가

- 공사원가계산서(또는 설계내역서)에 따른 재료비, 노무비, 산출경비의 합계금액(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직접공사비)을 말함.

4. 발주부서

- 공사 또는 물품제조·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함.

2 특정기술 선정심사 대상 (조례 제2조 ~ 제3조)

심사대상 기관

1. 시 본청 및 사업소

2. 시의회 사무처

3. 자치구(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한함)
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,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·공단

5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적용 대상인 출연기관

□ 심사 대상 사업

1. 공사 사업의 경우

가.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금액이 5천만원 초과

- 공사사업의 관급자재(부가세 제외금액) 구매의 경우도 포함

나.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(제경비와 부가가치세 제외) 합계 금액이 1억원 초과

※ 설계변경대상 사업의 경우도 포함

단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13장(공사계약 일반조건) 제6절 “4”(신기술·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)의 경우는 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

2. 물품제조·구매 사업의 경우

가.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·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원(부가세 제외금액) 초과

나.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·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(부가세 제외금액) 초과

※ (예시) 특정제품이 2개 이상인 경우

(예시1)	1개 특정제품은 3천만원	⇒ <u>3천만원인 1개 제품만 심사 대상</u> (위 “가”에 적용됨)
	다른 1개 특정제품은 1천5백만원 경우	
(예시2)	1개 특정제품은 9천만원	⇒ <u>2개 제품 모두 심사대상</u> (위 “나”에 적용됨)
	다른 1개 특정제품은 1천5백만원 경우	

※ 조달계약으로 특정기술을 구매하는 경우도 “1”, “2”를 따른다.

단, 2019. 11. 17. 이전에 설계 완료된 사업으로 「조달사업법 제5조의2」에 의한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 제외

□ 심사 제외대상 사업

1. 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(즉,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한 신기술)

[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]

제6조(심의·자문 요청) : ①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(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)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

제5조(기능) :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

1~2. 생략

3.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(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)

4~7. 생략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생략

2.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

가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

나.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6조의2에 따른 전력신기술

다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

라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

[건설산업기본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~3. 생략

4. "건설공사"란 토목공사, 건축공사, 산업설비공사, 조경공사, 환경시설공사, 그 밖에 명칭에 관계 없이 시설물을 설치·유지·보수하는공사(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)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.

2.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

※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(MAS : Multiple Award Schedule) 2단계경쟁 대상인 경우는 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

3

위원회 구성 (조례 제5조 ~ 제6조, 제9조)

□ 명 칭 :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

□ 기 능

1. 아래사항을 심사하여 해당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 최종 선정

가. 특정기술 필요여부

나.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

다.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

라. 특정기술 현장 적용성 및 유지 관리성

마.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2. 선정 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 실시

3.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

□ 구성방법

1.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(제3조 제①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7명 이상)으로 구성하 되,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구성

※ 외부위원 선정시 해당분야 동일기관 1명 선정 등 객관성 유지 필요

☞ 위원장

- 시 본청 및 자치구 : 실·본부·국장

-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: 기관장(다만,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,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분부장,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,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)

- 시의회 사무처 : 사무처장

- 공사·공단 및 출연기관 :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

☞ 위 원

[내부위원] - (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)

- 시 본청 및 사업소(3급 이상) : 4·5급 공무원
- 시 사업소(4급 이하) 및 자치구 : 5·6급 공무원
- 공사·공단 : 시 본청 상당 준용
- 출연기관 : 자치구 상당 준용

[외부위원]

-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- 해당분야 법인·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-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(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)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
- 「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
- 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
-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

2.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, 안전 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
3.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의 발주부서 팀장으로 함
4.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마다 실·본부·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·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함
5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

□ **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** (조례 제9조)

1. **위원회 위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심사에서 제척**

가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나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다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등을 한 경우

라.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2.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.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.

3. 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음.

4

위원회 운영 (조례 제5조 ~ 제6조, 제9조)

□ 운영절차(예시)



□ 안건 발생시

1. 사전 시장조사

- 가.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 기술 후보군을 마련하여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요청
- 나. 공사 현장 또는 구매물품 설치 장소 조사등을 통하여 특정기술의 필요성 유무 사전 진단 및 설계기술자 합동조사 등 사전 조치사항 파악
- 다.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제조·구매 중 특정기술의 전체개요 파악
- 라. 특정기술 등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계약방법, 계약의 특수조건 등 결정
- 마. 부득이하게 특정기술을 선정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경우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일하거나 동등이상의 다수 특정기술들을 비교·검토하여 자료 작성

2. 기본방침(계획) 수립

- 가. 공사 및 물품제조·구매의 개요
- 나. 추진 현황 및 추진 경위 등

다. 사전 시장조사 등 내용

- 특정기술의 필요성 여부, 성능 및 우수성,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검토내용
- 특정기술 가격의 적정성 검토내용
- 공사 또는 현장 여건상 기술적 제고사항 등 검토내용

라. 위원회 심사 상정대상

- 사전 시장조사를 통한 위원회 상정후보 업체선정은 3개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업체수를 따로 정할 수 있음.

※ 다만, 3개 미만인 경우는 전체상정하며,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

- 공사 사업에 대한 후보군을 마련함에 있어 「서울특별시 건설 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해야 함.

<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> - 제10조(설계반영의무)

-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,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(이하 "신기술개발자"라 한다)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 설계를 시행할 때 관련 신기술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,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발주청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.

마.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

-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
- 위원장 및 내·외부위원 선임
- 위원회 심사 의결사항
- 의결(의사결정) 방법 :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

□ 위원회 개최 통보

1. 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심사위원에게 안내

※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 생략 가능.

2. 발주부서에서 선정심사 의뢰 시 위원회에 제출해야할 자료

- 가. 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 (붙임 1)
- 나.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(붙임 2)
- 다. 특정기술 선정 사전검토서(붙임 3)

□ 위원회 개최 및 개최결과 보고

1. 위원회 개최 (개최주관 : 발주부서)

- 해당사업 발주부서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여 회의 주재

2. 심사위원의 검토의견서 작성

-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심사위원에게 심사안건에 대한 기술 선정 심사 검토의견서를 서면 제출하도록 함(검토의견서 서식 : 붙임 4)

3. 청렴서약서 작성

- 위원장은 심사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
(청렴서약서 서식 : 별첨 5)

4. 회의록 작성

- 회의록은 위원들의 심사내용, 쟁점사항, 결정과정 등을 일목요연하게 작성 (회의록 서식 : 붙임 6)
- 속기 또는 녹음을 통하여 기록
다만,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음

5. 개최결과 보고

- 회의가 종료되면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참석위원으로부터 의결 사항에 대한 개별 서명을 받도록 함(심사의결서 서식 : 붙임 7)
- 심사의결서, 회의록, 심사위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개최결과 보고

붙임 1)

특정기술 선정심사 요청서

안건번호	제	호
------	---	---

건 명	
-----	--

발주부서	
제출년월일	년 월 일

붙임 2)

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안건 개요			
요청부서		요청일	
총사업비		특정기술비	
공사(사업)명			
공사개요 (사업개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공사위치 : ○사업규모 - - ○사업비 : ○계약방법 : 		
심의안건 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심사대상(심사안건) - ○○ 특정기술 선정 ○특정기술 개요 - - - - ○심사요청 사유 - - 		
별첨서류	공사(사업) 세부 설명서 1부. 끝.		

붙임 3)

특정기술 선정 사전 검토서

사업내용

공사(사업)명			
발주부서		발주방법	
공사비(사업비)		특정기술비	
심사 안건명			
[공사(사업)개요]			
[특정기술 개요]			

추진경위

-
-
-

□ 사전 검토내용

분 야	검 토 내 용
필요성 (타당성)	
성능 및 품질 우수성	
가격적정성	
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	
기타 검토사항 (기술적 검토 등)	
총 합 검토의견	

년 월 일

작성자 : (서명)

확인자 : (서명)

붙임 4)

특정기술 선정심사 검토의견서

안 건 명 :

검토분야	검 토 의 견	비 고

년 월 일

검토의원 :

(서명)

붙임 5)

청 령 서 약 서

- 심사건명 :
- 발주부서 :

본인은 위 심사건에 대한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취득한 심사기준, 심사내용 및 심사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해 보안을 준수하겠습니다.
2. 본인은 위 심사건과 관련된 사업의 설계·시공 등에 직·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3.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및 향응과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.
4. 심사위원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심사위원 : (인)

붙임 6)

회 의 록

회의개요

- 안 건 명 :
- 일 시 :
- 장 소 :
- 참석위원
 - 위원장 :
 - 위 원 :

발언내용

- ○○○ 위원 :
- ○○○ 위원 :
- ○○○ 위원 :
- ○○○ 위원 :
- ○○○ 위원 :
- ○○○ 위원 :

붙임 7)

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

1. 안 건
2. 일 시
3. 장 소
4. 의결사항 : 별첨

년 월 일

○○○○(기관)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

위원장	○○○ (인)
위 원	○○○ (인)
위 원	○○○ (인)
위 원	○○○ (인)
위 원	○○○ (인)
위 원	○○○ (인)
위 원	○○○ (인)